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입장권등 본인 구매 여부 확인 시 요구 정보 최소화 >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45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9. 06.

다. 회 부 일: 2024. 9. 0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입장권등을 예매·구매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 요구로 공연사와 관람객 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제시와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연자에게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31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공연자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권등을 본인이 구매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연자가 관람자의 정보 확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8 및 제31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8(관람자 확인) 공연자는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생략) <신설>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자가 제12조의8에 따른 관람자 확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의2¹⁾는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즉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암표 신고 게시판의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3년 2,16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²⁾하는 등 입장권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기획사 등은 입장권등이 부정판매가 아닌 공식 예매처에서 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 입장 시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음.

-
- 1)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암표 신고게시판은 신고된 암표 의심 사례를 티켓 예매처에 송부하여 소명요청 및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암표 신고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8.
신고건수	359건	785건	4,224건	2,161건	1,364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현행법 제5조³⁾는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이 관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에 공연장 및 공연기획사 등은 본인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예매 내역 등 필요 서류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입장권등을 구매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 확인 과정에서 공연 기획사와 관람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연자에게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기준을 공연자가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공연법」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④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4) 이준석 기자, “BTS 부산 팬미팅 입장 거부” 항의...“원칙 따라 진행”, KBS 뉴스, 2019.6.1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22958&ref=A>
김한솔 기자, ‘아웁, 플미...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의 그늘’, 경향신문, 2023.9.14.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9141618001>

개정안은 본인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본인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과 공연 기획사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입장권등의 암표 거래 및 불법 양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대리 티켓팅 및 아이디 옮기기⁵⁾ 등 암표 거래의 수법도 다양해짐에 따라 부정판매를 제재하기 위하여 입장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본인 확인 절차를 보다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또한, 최근 입장권등의 형태가 현물 입장권에서 모바일, NFT 등 다양화⁶⁾되고 있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법령을 통해 규정할 경우 입장권 형태 및 입장방식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속도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본인 확인의 기준에 대하여는 공연 기획사 또는 제작사가 공연 및 입장권등의 형태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짐.

5) 대리 티켓팅란 암표 거래 업체가 구매자의 아이디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아 구매자의 계정으로 직접 예매를 해주는 방식이고, 아이디 옮기기란 이미 암표 거래 업체가 확보한 입장권등을 취소함과 동시에 구매자의 계정으로 예매하는 방식을 의미함.

6) 이태수 기자, 'NFT 티켓은 어떻게 암표 막나...'블록체인으로 매크로 차단'', 연합뉴스, 2024.1.25.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5073800005?input=1195m>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입장권등의 암표 제재 차원에서 본인인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